

三星半導體通信株式會社 篇

秋 商 業

〈企劃 調査室〉

所로서 1981年 5月 1日 設立되어 通信 및 半導體分野의 尖端技術을 開發하는 産室로서의 역할을 擔當하고 있다. 研究人員은 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研究開發投資는 賣出額比 82年度 3.5%에서 83年度에는 5%로 增額시켰으며, 向後 同 投資額은 더욱 增大시킬 豫정이다.

또한 同 研究所의 研究員으로 選定됨과 同時에 兵役特例를 받을 수 있으며, 總 300여명의 研究員이 一絲不亂한 研究開發體制를 構築하여 各 者가 맡은 分野의 研究에 몰두하고 있고, 그 成果를 代表할 수 있는 開發實績은 다음과 같다.

- 3萬 가입자 수용 ESP開發
- 輸出型 PABX(SENTRY)開發
- 電話機 1, 2, 3次 開發
- 電子式 키-폰
- 전자 손목시계용 소자 및 MELODY IC 20여종
- 4 Bit MICOM
- TV用 IC 및 音響用 IC
- 16Bit KONIX SYSTEM開發
- 64KD-RAM 自體開發生産

特許管理 現況

會社의 沿革은 짧지만 外國出願 4件, 國內出願 100件등 104件의 工業所有權을 出願하였고, 40여件이 登錄되었다.

特許 및 情報管理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하여 83年 9月 美國의 데이터베이스인 DIALOG와 接續된 온-라인 데이터 檢索시스템을 設置·運用하고 있으며, 84年 1月부터는 ADL社의 데이터베이스인 TELESCOPE를 契約·活用하는 등 當社의 事業과 關聯分野의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會社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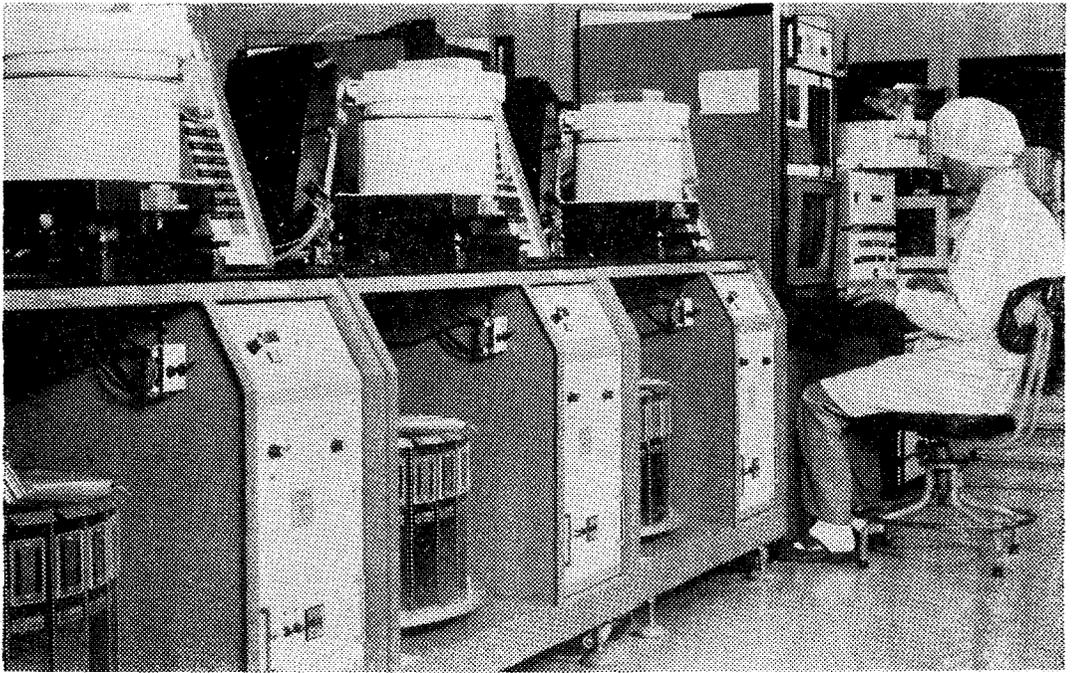
當社는 政府의 電氣通信網 現代化와 더불어 電子式 電話交換設備의 採擇方針에 따라 1977年 2月 政府의 全額出資로 韓國電子通信株式會社로 設立되었다.

1979年 12月 서울 永東과 堂山電話局에 電話 交換設備을 供給하여 開通을 보게 되었다는 데 이는 우리나라 最初 電子交換機의 生産·開通인 것이다. 그 後 1980年 3月 政府의 民營化方針에 따라 三星GROUP에서 引受하게 되었으며, 同年 9月 三星GTE通信(株)를 흡수합병하는 한편 1982年 10月에는 三星電子(株)의 半導體事業을 引受하면서 商號를 三星半導體通信株式會社로 변경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蓄積된 技術을 바탕으로 空間分割方式 電子交換機에 이어 時分割方式인 電子交換機 S-1240과 私設電子交換機, 電話機, 電子式키-폰, 팩시밀리, 모뎀, 光通信, 컴퓨터 H/W와 S/W, 各種 OA機器 및 半導體分野에까지 事業領域을 擴大하였고, 特히 83年度에는 16Bit Super Micro Computer開發 및 國內 最初로 64 KD-RAM인 VLSI의 自體開發 成功과 더불어 賣出額 1천억원 돌파라는 驚이적인 성장기록을 達成하므로써 尖端技術의 搖籃, 産業電子의 旗手로서 豐饒한 産業社會의 建設과 國民福祉增進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

綜合研究所 現況

研究所의 正式 名稱은 三星半導體通信綜合研究



活用할 수 있도록 계속 開發中에 있다.

서울 企劃調查室 內에는 課長 1名과 3名의 社員이 全社의인 特許管理를 擔當하고 있으며, 各事業部別로 中間管理部署를 選定·管理하여 特

역은 다음과 같다.

기타 特許管理體系, 技術情報管理, 特許教育 및 研修 등에 關聯된 제반 特許管理業務는 他社의 그것과 類似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권리별	출원보상	등록보상(최고)	실적보상(최고)	처분보상(최고)	비고
특허	30.000	500.000	연간수익의 5%	처분액의 5%	등록시 별도 심사 기준에 의해 1호봉 특진혜택 부여
실용신안	20.000	300.000	//	//	
의장	10.000	30.000	//	//	

許管理의 效率化를 추구하고 있다.

1983年 1月 1日부터 職務發明補賞規程을 制定 實施하고 있으며, 同 規程에 의해 既 30件 以上の 出願補賞을 한 바 있는데 同 規程의 補賞내 工業所有權 現況 (83. 12. 31 現在)

맺는 말

끝으로 同業他社에 促求하고자 하는 것은 充分한 技術蓄積이 되어 있지 않은 技術分野에서 國內企業들 間에 과당경쟁을 피하고 外國人의 國內 特許權 設定이 늘어나는 現實을 직시하고 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當社에서는 항상 門호를 개방하고 있으니 關連기업들과 기탄없는 의견을 함께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원	등록	이의신청	심판	비고
특허	43	6	3	1	
실용신안	16	6	2		
의장	17	11			
상표	36	20			
합계	112	44			